

2026년 예술기업 지원사업 단계별 공모 일정

신청기간 : 2026년 2월 9일(월) ~ 3월 9일(월) 15:00까지

초기창업	창업도약	성장도약(스케일업)
창업~3년 미만 사업모델구축 30개사 내외	3년~7년 이내 사업고도화, 확장 20개사 내외	창업~7년 이내 후속투자, 판로확대 10개사 내외

※ 예비창업(기초단계) 26년 5월 공고예정

※ 상세내용은 지원 단계별 공모 요강 확인 필수

2026 예술분야 성장도약(스케일업) 지원사업 공모 요강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후속투자 및 판로 확대에 필요한 맞춤 창업보육을 통해, 예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자생력을 제고하는

<2026 예술분야 성장도약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을 구축하고 확장성과 실행능력을 겸비한

예술분야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예술분야 창업기업이란?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술 분야의 기업 (업력 7년 이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을 모두 포함)

*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21091호, 2025. 11. 11., 일부개정)이 규정하는 "문화예술"(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예시 영역을 기준으로 예술기업 정의

* 연예, 영화, 만화, 건축, 출판, 어문, 게임, 애니메이션 등은 후 순위

I 공모 개요

- (공 모 명) 2026 예술분야 성장도약(스케일업) 지원사업
- (지원목적) 예술분야 성장기 기업의 사업화 자금 및 후속투자 유치 촉진 지원을 통해 예술기업의 성장 가속화 지원
- (협약기간) 2026년 4월 ~ 11월(약 8개월)
- (선정규모) 10개사 내외
- (지원내용) ①사업화 자금(100백만원~최대 150백만원) 및 ②후속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세부사항은 III. 지원 세부내용 참고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예술분야 창업기업 중 법인기업

※ 최대 1회 지원받을 수 있음 (연속지원 불가)

구분	신청(지원)대상 예시
예술분야 기획·제작	- 공연·전시·문학(장르 융합, 기술결합 작품 포함) 기획 및 운영 사업체 - 예술 콘텐츠·제품 기획 및 개발, 생산(VR, XR, 굿즈, 음원, 아트상품, 도록 등) 사업체 - 예술인(공연예술인·시각예술인·문학인 등) 매니지먼트 사업체 등
예술분야 유통·배급	- 예술작품(공연·미술·문학 작품 등)을 온·오프라인 판매 및 대여(구독서비스 등) 사업체 - 공연·전시 티켓, 용품(악기·악보·공연소품·화구 등) 온·오프라인 판매 및 중개·대행 사업체 - 아트상품·굿즈 온·오프라인 판매 및 중개·대행 사업체 등
예술분야 서비스	- 공연 실연·미술작품 제작 관련 기술 제공 사업체 - 예술분야 행사, 상품, 콘텐츠 홍보마케팅 대행 사업체 - 예술작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IP) 기반 서비스 사업체 - 예술교육 콘텐츠 제공 및 매개 서비스 사업체
글로벌 시장확대	- 해외 현지화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준비 사업체 - 해외 법인 및 지점 설립 준비 사업체 등

※ 예술작품 창·제작, 일회성 공연·전시·행사·해외투어, 단순·단건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건은 지원에서 제외됨

※ 위의 신청대상 구분 중 주력하는 1개를 선택하여 공모신청서 내 체크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신청요건) 공고일('26.02.09.(월)) 기준, ①누적 투자금 3억 이상을 확보한,
②7년 이내 법인기업 ※ 2개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누적 투자 기준

- 투자자 요건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투자만 인정

- ① 창업기획자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 ② 벤처캐피탈 (LLC 등 포함)
- ③ 기업형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CVC)
- ④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⑤ 기타 (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 투자계약 인정 유형 * (공고일('26.02.09.(월)) 기준, 투자 납입금 완료된 건만 인정)

- 보통주, 종류주(우선주),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
 - * 투자액, 투자계약일, 투자형태(조건) 등이 명시된 투자계약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인정되지 않는 투자 유형

- 기술 및 현물 출자, 업무협약,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융자, 투자 확약 등

② 설립일 기준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이 2019.02.09.~2026.02.09. 이내인 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에 의거,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동종전환 및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을 판단함

*포괄양수양도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한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새로 설립한 법인이 동종·유사 사업을 영위하고, 개인사업자의 폐업을 완료한 경우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우대사항) 아래 우대사항 해당되는 경우, 1차 심사(서류) 시 가산점 (각 2점) 부여 **※해당사항 증빙자료 제출 필수**

- 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 기업
- ②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지역인 기업
- ③ 기업 대표자가 청년(1986년 2월 10일 이후 출생한 만 39세 이하)인 기업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1인 이상
- ④ 장애인이 소유·경영하는 기업 혹은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한 기업

○ (신청제외 대상)

- ① 공고일 기준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예술분야 창업기업이 아닐 경우 신청 불가
- ② 예술경영지원센터 동 기간 모집 중인 모든 예술기업 지원사업 중 1개만 신청 가능
 - ➔ 신청자의 실수로 인한 신청오류(e나라도움 시스템 내 지원사업 신청오류, 신청요건과 다른 지원 신청서 제출, 단계 내 중복신청 등) 시 심사대상 제외
 - ➔ 하기 3개 사업 중 2개 이상 사업에 중복신청 확인 시 심사대상 제외

【초기창업】 2026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사업
【창업도약】 2026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사업
【성장도약】 2026 예술분야 성장도약 지원사업

- ③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③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1.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④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간접보조금의 교부제한 처분을 받은 자
- ⑤ 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⑦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다만, 구성원에 포함된 그 자가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⑧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⑨ (재)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는 신청이 불가함

< ⑨항 예외사항 >

1.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경우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 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기업
- ⑪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중인 자.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⑫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자
1.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⑫ 신청일 기준 기업 또는 단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및 금융·보험업, 캠블링·베팅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⑭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4에 해당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 ① 2026년 K-스타트업의 '중양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명시된 지원사업 중, **사업화 자금 지원과 창업보육을 모두 지원하는 사업일** 경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중복신청 가능하나, 선정된 후에는 사업의 명칭과 종류를 불문하고 1개 사업만 선택해야 함. **(타 사업과 중복 수행 불가)**

* 추후 중복수행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납 조치되며, 이후 예술기업 지원사업(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포함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①항 참고사항>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 운영관리 내규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

- ① 당해 지원사업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
 1. 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단,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
 2. 동일한 사업계획(지원사업의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센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 ② 단, 본 공모사업 접수 마감일('26.3.9.(월))을 기준으로 타 중양부처 등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 종료) 또는 3개월 이내(~'26.6.9.(화)) 협약 종료 예정인 기업은 신청 가능함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복수행이 가능함. 단, 선정된 부분의 비용 집행단계에서 중복하여 비용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중복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집행비용에서 제외하여 정산하거나, 지원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비용의 중복집행을 사전에 회피하여야 함.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비용 집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비용 불인정, 기타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③항 유의사항>

1. 창업 공간지원, 공유 오피스 등 공간만 지원받는 경우
2. 창업 사업화 자금만 지원받는 경우
3. 컨설팅, 멘토링 등의 창업 보육지원만 받는 경우
4. 홍보, 바우처, 교육지원 등의 일회성 지원만 받는 경우
5. 공연 및 전시 개최 등 프로젝트 성 지원만 받는 경우
6. 대출(융자, 상환) 형태의 지원만 받는 경우

III

지원 세부내용

○ (지원 세부내용)

(직접지원) 사업화 자금

- **사업화 자금 100백만원~최대 150백만원 (자기부담금 20% 필수)**
 - 사업모델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등 지원사업 관련 사업화 소요비용 지원
 - 선정기업별 지원금은 심사에 따라 차등 지원
 - 총사업비(100%)= 국고보조금(80%)+자기부담금(20%) * 총사업비 정산 필수

(기본 프로그램)

지원구분	세부내용
기업진단	○ 사업 역량 진단 및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성과관리	○ 성과관리) 지원사업을 통한 목표 설정 및 월별 달성도 측정 ○ 중간평가) 성과목표 달성도, 참여 성실도 등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 최종평가) 사업수행 종합평가, 우수기업 선정 * 중간 및 최종평가 시 증빙자료 제출 필수

(보육 프로그램) 후속투자 유치 및 판로개척 지원

지원구분	세부내용
후속투자 유치 지원	후속투자 역량 강화 - vc 전담 멘토링 ○ 담당 투자자와의 1:1 매칭 기반 집중적인 투자유치 역량 강화 지원 (5회 이상)
	후속투자 유치 지원 ○ 후속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IR 고도화, 1:1 투자상담회 및 데모데이를 통한 투자자 밋업 지원
	국내 창업 박람회 참가 ○ 주요 국내 창업 박람회 공동관 부스 참가 (참여기업은 별도 절차를 통해 선정)
판로개척 지원	사업 강화 - 재무 및 전문 컨설팅 ○ 재무구조 검토 및 후속투자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재무 컨설팅 지원 ○ 기업별 맞춤형 사업 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마케팅, 회계, 노무, 법률, 특허, 해외수출, 해외법인설립 등)
	국내·해외 판로개척 지원 ○ 예술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판로개척 비즈니스 밋업 지원 ○ 해외 바이어 및 사업 파트너 발굴 및 매칭 지원(온라인 진행) ○ 해외 투자자 밋업 및 해외시장 진출전략 컨설팅 등 연계 지원
후속투자 기회 연계 지원	○ 참여기업 중 일부기업 대상으로, 액셀러레이터(보육사)의 별도 심의를 거쳐 직접 투자 또는 후속투자 유치를 위한 연계 지원 제공

(예술기업 통합행사 '아트 스타트업 데이')

IR데모데이, 투자상담회, 대·중견기업 상담 등(하반기 1회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여 예정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전체기업 대면/비대면 필수 참석 원칙

※ 공모사업 설명회('26.2.24(화))를 통한 지원내용 상세 안내 예정

○ (사업화 자금 편성)

목	세목	세부내용		비고
인건비 (110)	보수 (01)	- 정규직 직원에 대한 보수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편성	사업비 세부 편성 기준은 공모신청서 <참고2> 총사업비 편성기준 참고 필수 *기업 자산성 물품 및 용역 편성 불가
	기타직보수 (02)	- 계약직 직원에 대한 보수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 광고 및 홍보물 제작비, IP 저작권 등록비, 운송비, 연구비 등		
	임차료 (03)	- 장비 및 장소 임차료		
	일반용역비 (04)	- 외부 대행 용역비(제품 및 서비스 개발, 홍보마케팅, 웹앱 시스템 개발, 촬영 및 영상 제작 등)		
여비 (220)	국외여비 (02)	- 국외 출장경비로 센터가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편성	

※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2회 분할교부

※ 국고보조금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예산집행 및 정산 진행 필수

※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기부담금)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정 회계법인의 회계검증 진행

IV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모 신청기간) 2026년 2월 9일(월) ~ 3월 9일(월) 15:00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 `26.03.09.(월) 15시00분 정각 접수 자동 마감(신청서 제출 버튼 자동 비활성화)

※ 접수 마감일 이후 최종 선정 수의 1.5배 미만 접수 시 접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제출 외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제출 불가

- (제출서류) ★ 모든 제출 서류는 E나라도움 시스템 내 첨부 필수

- 필수 제출서류) 총 4종

제출서류	파일형식
1. [양식_붙임1] 공모신청서	HWP
2. [양식_붙임2] 통합서식(서약서 등)	HWP
3. [양식_붙임3] 증빙서류 서식	PDF
① 사업자등록증 - 본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PDF 변환하여 필수 제출
② 법인등기부 등본 - 말소포함, 전체 페이지 제출 필수	
③ 포괄승계계약서 (해당시)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 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 포괄승계계약서 제출 필수 포괄양수양도: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한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새로 설립한 법인이 동종·유사 사업을 영위하고, 개인사업자의 폐업을 완료한 경우	
④ 2024~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25년은 가결산 자료 제출 가능 (최종 선정 시 확정 재무제표 추가 제출)	
⑤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전 발급 필수(발급 신청 후 약 3시간 소요)	
4. 투자 증빙서류 (3종) - ① 투자계약서(전문), ② 주주명부, ③ 투자금 납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증 또는 잔액 증명서(입금자명, 투자금 입금일자 발행기준) 3종 필수 제출 * 필요 시 기타 투자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가능 (주주 간 합의서, 주식양도 계약서 등)	zip

※ 증빙서류 3-1. ~ 3-5. 발급 및 상세 안내는 [붙임3] 증빙서류 서식 필수 참고

※ 모집공고에 첨부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모든 서류는 공고일(`26.02.09.(월))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선택 제출서류)

제출서류	파일형식
5-1. 추가 증빙서류(우대사항) - 공모요강 내 [우대사항] 내역 확인 후 해당 사항 증빙자료 제출 - 증빙서류 오제출, 미제출 등 증빙 불가 시 가산점 부여 불가	PDF
5-2. 기타 기업 관련 지정 및 인증서, 수상실적(상장) 등 심의 참고 자료 등	PDF
6. 기업소개서 및 사업 포트폴리오 등 - 표지 포함 10p 이하 PDF 파일로 제출	PDF

○ (주의사항)

- 신청자의 실수로 인한 신청오류(e나라도움 지원사업 선택 오류, 지원 신청서 오제출, 중복신청 등)는 심사에서 자동 제외됨

※ 2026 예술기업 지원사업 e나라도움 지원사업 목록 (총 3개)

【초기창업】 2026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사업

【창업도약】 2026 예술분야 창업도약 지원사업

【성장도약】 2026 예술분야 성장도약 지원사업

- 신청·접수 마감(26.03.09.(월), 15:00) 기한 내 e나라도움 시스템 제출 완료한 신청서만 유효함
- 신청·접수 마감(26.03.09.(월), 15:00) 당일은 e나라도움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접속 및 제출 지연 등 접수가 안될 수 있으니 사전 제출 필수

※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장애신고 등 문의

-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제출 외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등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함

V

선정기업의 의무 및 역할

○ (신청 시)

- 신청기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접수 마감 이후 변경이 불가함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 심사 과정에서 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 및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최종 선정 후 공모신청서에 기재한 성과목표 (산출물, 사업목표, 예술 생태계 기여도)는 개선을 위한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술작품 창·제작, 일회성 공연·전시·행사해외 투어, 단순단건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등은 지원에서 제외됨
- 본 지원을 통한 해당 분야 파급효과와 기업의 수익 다각화 등 관련 정량·정성적 성과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지원 및 수행 일반)

- 선정기업의 사업 시작일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와의 협약체결일로 함
-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후 한국평가데이터(KoDATA)를 통한 기업등록(인증) 필수
-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후 중도 포기 시 향후 예술기업 지원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후 유사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복수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반납 조치되며, 이후 예술분야 창업기업 공모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사업계획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이후라도 협약 취소(사업 취소), 사업비 환수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협약서 및 지원사업 정산매뉴얼, 기타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공모 신청 시 계획한 사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선정기업은 센터와 보육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시 필수

참여 및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선정기업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인권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전반에 걸쳐 예술인의 인권존중·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예술단체의 운영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 시 「예술인복지법」 제4조4에 따른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체결(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함)하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된 계약 내용을 미이행 할 경우, 해당 단체는 문체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기부담금) 집행 마감 기한 준수**

1. 집행 가능 기간 : **교부일 ~ 2026년 11월 13일(금)까지**
2. 제출서류 : 사업 종료 이후 30일 이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 ※ 교부 확정 통지 이전 집행 건 및 집행 마감 후 집행 건에 대해서 불인정 처리함
 - ※ 사업 종료 이후 회계검사 진행 및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필수

○ **(사업수행 시)**

- 선정기업은 심사를 통해 확정된 총사업비(국고보조금+자기부담금)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자기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0% 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선정 이후에도 자기부담금 비율을 유지해야 함
- 사업선정 이후 세부사업 및 예산계획을 센터 및 보육사와 협의한 후 교부 예정임
-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집행 필수임
- **사업선정 이후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전 과정에 필수 참석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기업 성장 의지가 없는 경우 지원 중단 가능하며, 교부된 국고보조금은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사업 기간(협약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 가능함
- 교부 이후에도 신청 사업 불이행 또는 부적절한 사업비 집행이 있을 경우 국고보조금 반납 조치함
- 본 사업의 보조금은 타 정부 지원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전에 센터 승인 없이 임의 용도 변경하여 집행한 사업비(자기부담금 포함)는 불인정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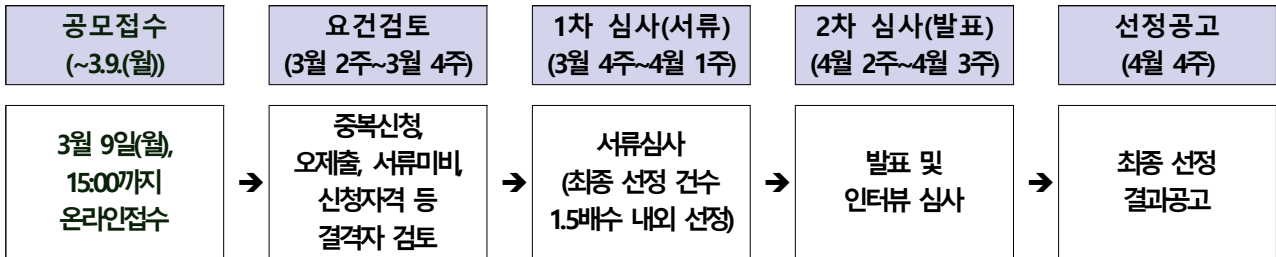
○ **(사업 종료 후)**

-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및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설문, 조사, 정보 제공 등의 센터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사업 종료 후에도 한국재정정보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모니터링에 의한 보완·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응하여야 함

VI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정) 2026년 3월 2주 ~ 4월 4주(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과 심사 대상자 e메일 및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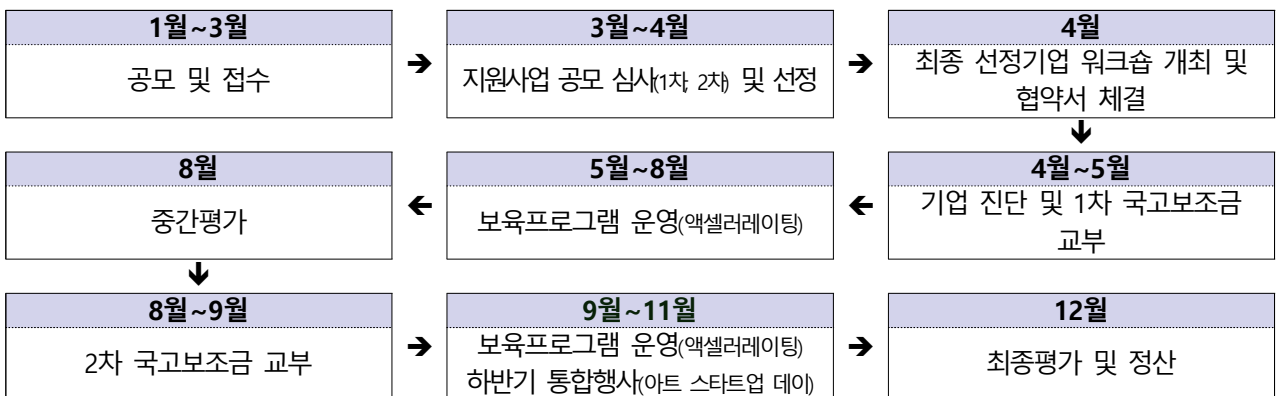
○ (심사방법) 외부 전문가에 의한 1차 및 2차 심사

※ 2차 심사(발표)의 경우 1차 심사 선정기업 대상으로 심사방법 및 일정 등 별도 공지 예정

○ (심사기준) 예술기업의 공모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제출자료 기반

①사업전문성, ②제안사업의 타당성, ③성장가능성, ④예술분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사업 운영 일정(안)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VII

지원사업 문의

- (문 의 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본부 기업육성팀
 - (문의방법)
 - (유선) 02-708-2248, 2258
 - ※ 전화문의 : 평일(월~금) 10:00~17:00 중 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e-메일) startup@gokams.or.kr
-

- ※ 신청자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보조금 부정수급, 용도 외 사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제재와 별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3조)
- ※ 지원사업에 대한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사업 선정 기업에게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습니다.